

□ 변경 대비표

요약발행일 : 2022년 08월 26일

신한마을법원TDF2040증권투자신탁(주식종합-재간접형)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2 콜레스 신설(중유C-O) 및 퇴직연금 콜레스 가입자격 정정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생략) ②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위탁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주책저당채권공유통화시행 또는</u>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책저당채권등모부채권 또는 주책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이하, 생략)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주책저당채권공유통화시행 또는</u>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책저당채권등모부채권 또는 주책저당증권 또는 주책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선형과 동일) ②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위탁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신책></u> ,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책저당채권등모부채권 또는 주책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이하, 생략과 동일)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신책></u> ,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책저당채권등모부채권 또는 주책저당증권 또는 주책저당증권 및 이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3. 나. (생략) <u>주책저당채권공유통화시행 또는</u>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른 주책저당채권등모부채권 또는 주책저당증권 「 <u>주책저당채권공유통화시행,에 따른 주책저당채권공유통화시행</u> 」,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책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권이 자금을 모은 주책저당증권, (이하 생략)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3. 나. (선형과 동일) <u><신책></u> ,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른 주책저당채권등모부채권 또는 주책저당증권 「 <u><신책></u> , 한국주책금융공사」,에 따른 한국주책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권이 자금을 모은 주책저당증권, (이하 선형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u>제3항</u> 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u>3영업일</u>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자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총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과·계실일 전날의 <u>대차대표</u>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총후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과·계실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총후 수익증권) 총과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과 단위로 쪼뚝민 셋째 자리에서 45이상이면 올림한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자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총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과·계실일 전날의 <u>재무상태표</u>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총후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과·계실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총후 수익증권) 총과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과 단위로 쪼뚝민 셋째 자리에서 45이상이면 올림한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u>대차대표</u>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u>재무상태표</u>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37조 (보수)	제37조 (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종설정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당해 총후 수익증권의 상당액)를 매월 <u>대차대표</u>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제37조 (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종설정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당해 총후 수익증권의 상당액)를 매월 <u>재무상태표</u>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제거의 결정 및 그 사유· <u>신설</u> .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제거의 결정 및 그 사유· <u>(법 제240조에 따른 환매금지일정집합투자기구의 환기를 변경하거나 환매금원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함)</u>

<p>2. 클래스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지정 :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⑤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종류 C-r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신설> - 종류 C-R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권유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신설> - 종류 C-re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신설> <신설></p>	<p>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⑤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종류 C-r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사전지정유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 종류 C-R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권유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사전지정유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 종류 C-re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사전지정유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 종류 C-O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유용 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p>
<p>2. 클래스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지정 :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생략) <신설></p>	<p>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현행과 동일) 16. 종류 C-O 수익증권</p>
<p>2. 클래스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지정 : 제37조 (보수)</p>	<p>제37조 (보수) ① (생략) <신설></p>	<p>제37조 (보수) ① (현행과 동일) (최초생성일로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 16. 종류 C-O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000] 다. 신막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2025년1월1일부터 2029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 16. 종류 C-O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000] 다. 신막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2030년1월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 16. 종류 C-O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60] 다. 신막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p>
<p>2. 클래스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지정 : 제38조 (판매수수료)</p>	<p>제38조 (판매수수료) ① (생략) 4.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g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r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p 수익증권, 종류 S-R 수익증권, 종류 C-pe 수익증권, 종류 Cre 수익증권, <신설>: 없음</p>	<p>제38조 (판매수수료) ① (생략) 4.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g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r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p 수익증권, 종류 S-R 수익증권, 종류 C-pe 수익증권, 종류 Cre 수익증권, <신설>: 없음</p>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
2. 투자전략상 문구 추가
3. 자본시장법 및 범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4. 투자신식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유요 업데이트
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제1부,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부,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제1부,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디블드유선)(종류C-O) DX131
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제2부 6. 집합 투자기구의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신원마을원활DF2040종로투자신탁(주식혼합-개간집합)(종류C-O)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디블드유선))
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제2부 6. 집합 투자기구의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별 구조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신설>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 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신설>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종개 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 으로서 가입한 투자자 <신설>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별 구조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블드유선)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 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블드유선)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종개 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 으로서 가입한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블드유선)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디블드유선)(C-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운용제도 (디블드유선)를 통하여 가입한 자
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제2부 6. 집합 투자기구의 구조 <계속>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R)를 통해 해마다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나입니다. <신설>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R)를 통해 해마다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나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블드유선) 적용으로 설정·설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퇴직연금(디블드유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R)를 사전지정운용제도 (디블드유선) 적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나입니다.

<p>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징정: 제2부 11. 매입, 판매 및 전환기준</p>	<p>제2부 11. 매입, 판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르라인-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신설></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n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 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신설></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C-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김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신설></p> <p><신설></p>	<p>제2부 11. 매입, 판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르라인-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유용계좌(디블드유선)를 통하여 가입할 자는 제외)</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n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 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유용계좌(디블드유선)를 통하여 가입할 자는 제외)</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C-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김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유용계좌(디블드유선)를 통하여 가입할 자는 제외)</p> <p>수수료미징구-오르라인-퇴직연금(디블드유선)(C-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유용계좌(디블드유선)를 통하여 가입할 자</p>
<p>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징정: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수수료미징구-오르라인-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신설></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n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 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신설></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C-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김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신설></p> <p><신설></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수수료미징구-오르라인-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유용계좌(디블드유선)를 통하여 가입할 자는 제외)</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n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 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유용계좌(디블드유선)를 통하여 가입할 자는 제외)</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C-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김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유용계좌(디블드유선)를 통하여 가입할 자는 제외)</p> <p>수수료미징구-오르라인-퇴직연금(디블드유선)(C-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유용계좌(디블드유선)를 통하여 가입할 자</p>
<p>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징정: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계속></p>	<p>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신설></p>	<p>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수수료미징구-오르라인-퇴직연금(디블드유선)(C-O) 클래스 신설에 따른 수수료, 보수 및 비용 주기</p>
<p>2. 투자인식력 평가 주기: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인력, 위임관리 및 수익구조</p>	<p>가. 투자인력 및 위임관리 (1) 주요 투자인력 이 투자인력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설></p> <p><생략></p>	<p>가. 투자인력 및 위임관리 (1) 주요 투자인력 이 투자인력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 이 투자인력은 투자목적의식에 사하여 설립되어 있으므로,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비율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운용합니다. <신설></p> <p><현행과 동일></p>

<p>3. 자본시장법 및 병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재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증권, 특수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직속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책지당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책지당계권등(모부채권 또는 주책지당증권은 제외한다.)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책지당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책지당계권등(모부채권 또는 주책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회권도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재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증권, 특수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직속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신책법,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책지당계권(모부채권 또는 주책지당증권은 제외한다.) <관행과 동일>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신책법(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책지당계권(모부채권 또는 주책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회권도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p>
<p>3. 자본시장법 및 병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2 <생략> 주책지당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른 주책지당계권등(모부채권 또는 주책지당증권) 신책법,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른 주책지당계권유동화회사법,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책금융공사법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지분을 보유한 주책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 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공권을 대여하거나 예치·대약하여 취득한 채권을 투자신약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2 <관행과 동일> 신책법(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른 주책지당계권(모부채권 또는 주책지당증권) 신책법, 한국주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책금융공사법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지분을 보유한 주책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공권을 대여하거나 예치·대약하여 취득한 채권을 투자신약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3. 자본시장법 및 병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p>	<p>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약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누어 1,000과 단위로 4/5입하여 절미한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약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누어 1,000과 단위로 4/5입하여 절미한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3. 자본시장법 및 병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2. 판매연기 또는 판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신설></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2. 판매연기 또는 판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판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p>
<p>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실행사 갱신: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 15.06%, 2등급</p>	<p>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 15.06%, 2등급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직전회계연도)</p>
<p>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실행사 갱신: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직전회계연도)</p>
<p>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실행사 갱신: 제2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판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p>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판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p>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판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2년 07월 31일)</p>
<p>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2년 07월 31일)</p>
<p>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4. 집합투자업자</p>	<p>제2부 4. 집합투자업자</p>	<p>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최근현황 갱신</p>
<p>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최근현황갱신 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최근현황갱신 라. 운용자산 규모 -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22년 07월 31일)</p>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
- 2 투자전략상 문구 추가
- 3 투자전략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 4 자본시장법 및 병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약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신설> <신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사전지정유용제도(디폴트유선) 적용으로 설정·설정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퇴직연금(디폴트유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사전지정유용제도(디폴트유선) 적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투자전략상 문구 추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전략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전략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투자전략은 투자목적시점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비중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운용합니다.
3. 투자전략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 주이(연평균수익률)	투자비용, 투자실적 주이(연평균 수익률)	투자비용, 투자실적 주이(연평균 수익률) - 최근의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년도, 2022년 07월 31일)
4. 자본시장법 및 병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 에 계상된 투자전략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원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통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계무상태표상 에 계상된 투자전략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원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통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약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 최근의황갱신(기준일: 2022년 07월 31일)